Midas

공통/업종별 심의 가이드

Final Update 2018.09.28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

kakao

목차

01 공통 심의가이드 p3

02 업종별 심의가이드

- 식품(특수영양식품포함) p5
- 건강기능식품 p7
- 다이어트 P8
- 의약품/의료기기/병원 P9
- 화장품 P13
- 주류 P14
- 담배 P15
- 도박/복권/경마/경륜/카지노 P16
- 영화/비디오 P17
- 게임 P18
- 보험 P19
- 대출/대부업 P20
- 선거/정당 p21
- 기타 집행불가 p22

1) 공통 심의가이드

1 법령 및 주요 권고사항 위반 시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 광고에 대한 제반 법령 및 지침 또는 고시에 반하는 광고 집행 불가
- 정부기관 및 이에 준하는 협회/단체의 주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광고 제한
- 소송 등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 또는 국가기관에 의한 분쟁조정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일방적 주장이나 의견은 광고 집행 불가

2 선정성/음란성 기준 위반 시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 성기, 성행위, 성범죄와 관련된 내용을 묘사하거나 저속, 흥미위주로 다루는 내용은 광고불가
- 음란정보나 퇴폐업소, 매춘 등 성매매를 권유, 유도, 조장, 방조하는 내용은 광고불가
- 성적 표현을 통하여 성적 유희의 대상을 찾거나, 강간 등 성폭력행위를 묘사하는 내용은 광고불가
- 속옷을 착용한 모델이미지는 성인타겟팅을 통해서만 광고 집행가능
(속옷을 제품으로만 보여주는 광고 형태는 타겟팅 조건 없이 집행 가능)

3 폭력성/혐오감/공포감 기준 위반 시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 살인, 폭행, 협박, 학대행위 등 구체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지나친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내용은 광고불가
- 구토, 배설, 오물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혐오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은 광고불가
- 낙태, 절개, 전달, 수술장면, 출산 등 의료행위를 지나치게 상세히 표현하여,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은 광고불가
- 욕설, 언어폭력 등으로 굴욕감 내지,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은 광고불가

4 권리 침해 기준 위반 시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 타인 혹은 타 집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방 등 권리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은 광고불가
- 정당한 권한 없이 개인의 사생활 침해, 초상권 등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상표/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광고불가
- 사실유무와 상관없이 타사 또는 타사 제품을 직접적으로 비교/비방하는 경우에는 광고불가
- 화폐 도안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금지되며, 광고상에 무단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광고 불가
- 화폐 도안 사용 문의 : 한국은행 > 화폐 도안 이용기준 > 전자석 삽화 가이드 준수
(http://www.bok.or.kr/broadcast.action?menuNaviId=1579)

5 허위/과장 기준 위반 시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 허위의 사실로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광고불가
- 중요한 정보를 생략하거나, 부분적인 사실을 강조하여 사람들을 잘못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은 광고불가
- 이용자에게 실제 발생한 사실로 오인되도록 하는 표현은 광고불가
- 광고주 및 캠페인 목적과 관련성이 낮은 내용을 통해 이용자를 유인하는 경우는 광고불가
- 광고를 통한 고지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광고불가
- 사실에 대해 실증할 수 없거나, 객관적인 근거 및 공인된 자료 없이 사용된 최상급의 표현(최고/최저/최대)은 광고 불가

6 미풍양속 저해 기준 위반 시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 도박, 또는 지나친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은 광고불가
- 미신숭배 등 비과학적인 생활태도를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은 광고불가
- 특정 종교, 종파 또는 종교의식을 비방, 왜곡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은 광고불가
- 성별/장애/연령/사회신분/지역/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은 광고불가
- 자살을 미화, 권유, 조장 및 자살 방법을 적시하여 자살 충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불가
- 범죄, 범죄인 또는 범죄단체 등을 미화하는 내용은 광고불가
- 기타 폐륜적, 반인륜적 행위를 묘사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불가

7 청소년 보호에 관한 기준 위반 시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 청소년보호법에서 지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유해 품목”은 성인타겟팅 없이 광고불가
-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매체 기준을 준수
- “유해 품목”은 인터넷광고심의규정에 규정된 사항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함
- [주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주류
- [담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담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마약류 및 동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원료물질
- [한국마사회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경마
- [경륜/경정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경륜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정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복권
- [관광진흥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카지노업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1) 식품(특수영양식품포함)

1. 제품, 품목, 제조방법 또는 성분 등에 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보고한 사항 이외의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
(단,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 또는 발견된 사실로서 식품학, 영양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이나 성분 등이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입증된 사항과 식품학 영양학 등의 문헌을 이용하여 문헌의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 발표년월일을 명시하는 사항은 예외)

2.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불가

3.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용성 등에 대한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은 광고불가

4. 제품의 원재료 또는 성분과 다른 내용은 광고불가

5.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은 광고불가

6.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 또는 발견한 사실로서 식품학, 영양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이 외의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
(단, 제조에 관하여 연구 또는 발견한 사실에 대한 식품학, 영양학 등의 문헌을 인용하여 문헌의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 발표연월일을 명시하는 사항은 예외)

7. 각종의 감사장, 상장(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제품과 직접 관련하여 수여한 상장을 제외)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은 광고불가

8. 외국어의 사용 등으로 외국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또는 외국과 기술제휴한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불가

9.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이거나, 제품의 제조방법,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 관련이 적은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체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되게 하는 내용은 광고불가

10.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 사진 등을 사용하는 표시, 광고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음향을 사용할 경우 광고불가

11 화학적 합성품의 경우, 그 원료의 명칭 등을 사용하여 화학적 합성품이 아닌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을 경우 광고불가

12 영,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이 모유를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은 광고불가

13 식품의 영양소 함량에 대한 내용의 광고로서, 다음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은 광고불가
① 객관적인 근거자료 없이 무가당, 저당도, 저지방 또는 저칼로리 등의 영양소 함량을 표현하는 내용
② 영양소의 함량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고 특정 영양소의 함량이 일반적인 식품보다 현저한 차이를 강조하는 내용

14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표현으로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불가
① “최고”, “가장 좋은” 또는 “특” 등의 표현
② “베스트”, “모스트” 또는 “스페셜” 등의 표현
③ “Best”, “Most” 또는 “Special” 등의 표현
④ “특수제조법”, “젊음유지”, “미용효과” 또는 “천연”, “무공해” 등의 모호한 표현

15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상 표시할 수 없는 사항('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10조)
-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 가공, 수입, 유통, 판매하는 자가 식품이 아닌 장난감이나, 그 밖에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하는 행위

16 친환경농업육성법'상 표시할 수 없는 사항('친환경농업육성법' 제 17조의 제5호)
- '친환경농업육성법'상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광고하거나, 친환경 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인증품을 광고하는 행위

2) 건강기능식품

1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 식품을 의미함('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2 건강기능식품 광고(배너) 및 랜딩페이지의 제작물에 대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심의필증이 없을 경우 광고불가

3 유명연예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등의 공인을 활용하여, 자가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공인, 추천, 지도하고 있다는 내용은 광고불가

4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현으로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은 광고불가
① "최고", "가장 좋은" 또는 "특" 등의 표현
② "베스트", "모스트" 또는 "스페셜" 등의 표현
③ "Best", "Most" 또는 "Special" 등의 표현
④ 각종의 감사장 또는 체험기를 이용하거나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표현

3) 다이어트

1 다이어트 광고는 체중감량/개선 및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를 의미함

2 다이어트 광고는 다이어트 목적의 직/간접적 보조기구, 기능성제품, 보조제, 생약, 한약 및 병원, 클리닉, 민간요법 광고에 포괄적으로 적용함

3 다이어트 광고 집행 시에는 상품과 관련한 아래의 정보를 광고물 또는 연결된 페이지에 표시하여야 함
: 품목/상표 및 대표자 성명/영업소 소재지 주소/사업자등록번호/다이어트 상품의 구매, 이용에 관한 약관

4 ※ 다이어트 광고의 부적합한 표현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 타 품목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
•단기간에 10kg 이상의 체중감량 또는 1일 1kg 이상의 체중감량 등 일반화하기 어려운 체중감량 표현
•허리 -○㎏", "허리 -○inch" 등 단기간에 특정부위를 비정상적으로 감량할 수 있다는 표현
•"비만의 근원적 치료가 가능하고, 비만방지 할 수 있음"
•"암의 치료 및 억제가 가능함" 또는 "당뇨병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함", "각종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음" 등 질병의 치료, 예방, 억제 등의 효용을 나타내는 표현
•"식이요법 또는 운동 없이 체중감량을 할 수 있음" 또는 "무엇을 얼마나 먹어도 체중감량을 할 수 있음",
•"이 제품을 사용하면 누구나 체중감량을 할 수 있음" 등 식이요법, 운동 등을 병행하지 아니하여도 당해 다이어트 상품만으로 체중감량이 가능하다는 표현
•"다이어트 후 요요현상 없음"
•"제품사용만으로 체중감량을 할 수 있음"
•"피부미용에 도움이 됨"
•"혈중 콜레스테롤 조절작용이 있음"
•"당과 지방흡수 지연효과가 있음"
•"체내 노폐물과 유해물질 배설을 도움을 줌"
•"영양분의 흡수촉진작용이 있음"
•"체지방분해가 가능함"
•기타 허위과장된 효용을 나타내는 표현
•사용자의 건전한 인터넷 이용에 방해되는 이미지, 문구 사용시 자체 심의기준에 의거 광고게재지면에 제한을 가할 수 있음

4-1) 의약품

1. 의약품 광고(배너) 및 랜딩페이지의 제작물에 대해, 한국제약협회의 사전심의필증이 없을 경우 광고불가
(배너 소재 내에 광고심의필문구 [광고심의필 : 광고심의번호] 또는 광고심의필도안 삽입 필수)
2. 어린이가 광고모델로 나오는 모든 의약품 광고에서 어린이가 의약품을 복용하는 장면은 광고불가
3.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경고문구 삽입 필수
4. 전문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지정고시에 따른 광고금지대상 의약품)에 관한 내용은 광고불가
5. 효능이나 성능을 과장하거나, 약품의 오용과 남용을 조장하는 표현은 광고불가
6. 의약품의 부작용을 부정하거나,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은 광고불가
7. 광고대상을 효능, 효과와 무관하게 특정 대상자에 한정하는 표현은 광고불가
8. 의약품을 의약품이 아닌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은 광고불가
9. 의약품이 아닌 제품을 의약품이나 의약학적인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하는 표현은 광고불가
10.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자가 이를 보증, 지정, 공인, 추천, 지도 또는 선용하고 있다는 내용은 광고불가
11. 효능, 효과를 광고함에 있어, "확실한 보증" 또는 "최고", "가장 좋은" 등의 단정적인 표현은 광고불가
12. 주성분이 아닌 성분의 효능, 효과에 관한 표현은 광고불가
13. 사용 전, 후의 비교 등으로 그 사용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거나 적응증상을 위협적인 표현으로 표시 또는 암시하는 내용은 광고불가
14. "구입, 주문쇄도", "단체추천" 기타 이와 유사한 표현은 광고불가

15 의약품의 효능, 효과와 관련되는 질병의 증상이나 수술장면 등의 위협적 표현은 광고불가

16 질병에 대한 불안감,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저속한 표현은 광고불가

17 이용자가 병에 걸린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막연한 증상이나 포괄적 증상의 표현은 광고불가

18 환자를 조롱하거나 질병을 저속하고 품위 없이 다루는 표현은 광고불가

19 인체해부 및 수술장면의 지나치게 사실적인 묘사 또는 희화적 표현, 모델의 연기로서 공포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표현은 광고불가

20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 식물의 가공품임을 표현 또는 암시하는 내용은 광고불가

21 낙태를 암시하는 내용은 광고불가

22 의약품에 관한 인터넷광고 또는 광고소재에 연결되어 하이퍼링크로 뜬 페이지는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해야 함

23 약사법 제31조제1항 및 동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약품 제조, 수입허가를 받거나 의약품 수입신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의약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는 광고불가

24 현상품/사은품 등의 경품 무료 제공에 관한 내용은 광고 불가

4-2) 의료기기

1. 의료기기 광고(배너) 및 랜딩페이지의 제작물에 대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 사전심의필증이 없을 경우 광고불가
2.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 표현은 광고불가
3.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하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그 밖의 자가 이를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 내용은 광고불가
4.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그 밖의 자가 의료기기를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은 광고불가
5.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하여 암시적 기사/사진/도안 그 밖의 암시적 방법에 의한 표현은 광고불가
6. 외국제품을 국내제품으로 또는 국내제품을 외국제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은 광고불가
7. 사용 전/후의 비교 등으로 그 사용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거나 적응증상을 위협적인 표현으로 표시 또는 암시하는 내용은 광고불가

4-3) 병원

1 병원(의료) 광고의 경우 광고물 또는 연결된 페이지 상에서 광고주명이 필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2 [의료법] 에 따라 의료기관, 의료법인, 의료인이 아닌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힙니다.

3 [의료법] 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중 해당되는 의사협회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로부터 사전 광고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결과를 제출해야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4 심의 받은 내용과 일치하는 소재를 등록해야 하며, 심의필번호를 소재에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5 병원 및 의약품 광고 중, 본인부담금("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상의 급여비용)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내용은 광고 불가

6 비뇨기과/산부인과 광고는 병원 홍보만 가능하며, 크리에이티브 및 랜딩페이지는 사전 검수 후 진행 가능합니다. (성인타겟팅 필수)

7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해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에 한해, 광고 내 "전문병원" 이라는 명칭 사용이 가능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5)

8 또한 아래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행이 불가합니다.

① 시술 전/후 사진을 포함한 광고 소재
② 특정 진료 및 기관이 질병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는 표현의 사용
③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담은 광고 표현의 사용
④ 혐오스러운 치료 사진이나 건강상에 대한 불필요한 공포감 및 불안감을 조장하는 내용
⑤ '최고','베스트' 등의 최상급 표현의 사용
⑥ 효능, 효과를 광고함에 있어서 '무통', '가장 좋은' 등의 단정적 표현의 사용
⑦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

5) 화장품

1. 허가받은 사항 이외의 효능을 나타내는 표현은 광고불가
2. 의약학적 효능,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은 광고불가
3. 화장품의 부작용 또는 주의사항을 부정하거나,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은 광고불가
4.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것으로서 제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 효과 등에 관하여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은 광고불가
5.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또는 기타의 자가 이를 지정, 공인, 추천, 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현은 광고불가
6. 주성분이 아닌 원료나 성분을 과장하여 주성분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은 광고불가
7. 사용 전과 사용 후를 뚜렷하게 대비하여 효능을 과신하게 하는 표현은 광고불가

6) 주류

1 ※일반 주류광고(알코올 도수 1도 이상의 경우)의 경우 아래 사항을 반드시 준수
- 20세 이상 성인타겟팅 필수
- 또는 실명 성인인증을 통해 성인여부를 구분 할 수 있는 방법 사용
- 주류 광고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경고 문구를 반드시 표기

2 ※브랜딩 광고의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
- 주류 브랜드 및 술병 등 주류를 연상시키는 소재의 직접적인 노출은 불가, 순수 공익적 캠페인(금주캠페인 등)은 가능
- 20세이상 성인타겟팅 없이 일반광고로 집행가능
- 모든 주류 광고는 사전에 "Daum 광고정책담당자"와 사전 확인 후 진행

3 ※소재제작 시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소재는 제작이 불가
- 주류 판매촉진을 위한 경품 및 금품 제공
- 지나친 음주분위기를 묘사하거나 음주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은 광고불가
- 성인이 아닌 모델 등장
- 음주가 사회적 인정이나 성공에 필요하다고 주장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표현은 광고불가
- 적당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지 않다는 표현은 광고불가
- 음주가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은 광고불가
- 음주가 체력 또는 운동능력을 향상시킨다거나, 질병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은 광고불가
- 운전, 운동, 등산 또는 작업 등 높은 경각심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음주하는 행위를 모사함으로써 안전을 저해하는 표현은 광고불가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4항에 따라 경고문구 표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내용으로 삽입 필수

7) 담배

1 담배에 관한 일반 광고는 집행불가

2 단, 담배사업법 제1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판매가격의 공고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에 한함
① 제품의 이름
② 규격
③ 포장구분
④ 포장단위
⑤ 판매가격
⑥ 판매개시일

3 정부단체 및 이에 준하는 기관/단체의 공익적 목적의 금연광고 등은 광고 집행가능

4 모든 담배광고는 반드시 성인 타겟팅을 통해서만 광고 집행가능, 광고 소재를 통한 외부링크 삽입 금지

5 '담배 가격공고'는 판매개시일 5일 전부터 판매개시일까지로 집행기간을 제한

8) 도박/복권/경마/경륜/카지노

1. 도박 및 기타 사행 행위에 관한 내용은 광고불가
2. 복권 광고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광고계획서에 따른 경우 외에는 광고불가
3. 한국마사회가 아닌 자가 마사회, 경마장 또는 경마의 명칭을 경마와 유사한 사행행위에 관한 광고물에 표현할 경우 광고불가
4. 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나눔lotto의 기업PR 광고는 집행가능
5.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사업자는 광고불가

9) 영화/비디오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영화/비디오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함

2 영화/비디오 광고 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사전심의 통과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영화광고 소재에 관한 심의 필증 원본, 심의 필증 사본, 심의 필증 내역 캡처 이미지(영상물등급위원회 사이트) 중 선택
- 청소년 유해성으로 심의 받은 광고선전물은 광고집행 불가

3 영화광고 소재에는 확정된 영화 등급을 표시 해야 하며, 제한 상영가 등급을 받은 영화는 광고 집행 불가

4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 필증이 있어도 카카오광고 정책에 어긋나는 경우는 광고 집행 불가

5 모든 장르 영화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가이드
- 성행위 장면, 성행위 유사 장면, 성적수치심을 줄 수 있는 장면 (성기, 성범죄, 매춘, 음란정보물 등) 불가
- 성인 키워드이거나 성인을 타겟으로 하는 자극적인 문구 표현불가. 단, 영화제목에 섹스라는 단어가 들어갈 경우 가능. (예: 섹스앤더시티 등)
- 누드, 속옷 착용 등 노출이 심한 이미지 불가
- 해변을 배경으로 한 영화 또는 영화장면에서 수영복 착용 컷 사용 가능하나, 노출이 심한 경우 진행 불가
- 등급을 표시하는 '청소년관람불가' 가 아닌 성인타겟 목적의 18/19금 카피, 18/19마크 등 사용 불가
- 실제 사건으로 오인할 수 있거나, 해당 시점의 민감한 사회적 이슈를 이용한 크리에이티브 구성 불가
- 장르 구분 없이 사용자가 거부감, 혐오감을 느낄 수 있다 판단되는 소재 노출 불가
- "청소년관람불가", "공포" 영화는 심의 전 사전 소재 검수 필수
'전체관람가'로 심의 난 포스터의 카피, 이미지더라도 노출 순서, 시간, 방법에 따라 수정요청 할 수 있음
- 검수 후 노출된 소재더라도 고객 CS 접수되었을 경우, 바로 노출 중지시킬 수 있으며 소재교체 후 재 진행 가능

6 공포/액션/스릴러 영화 가이드 (혐오스럽거나 폭력적인 이미지, 영상, 사운드 효과를 통해 신체상해, 죽음, 살인을 표현하거나 연상시키는 광고물)
- 광고문구상에 "살해하자, 살인하자, 죽이자"등의 위협적인 문구나 유해성 문구 사용 불가
- 뉴스나 신문에서 볼 수 있는 "살인, 살해 등 단어 및 살해당하다(제3인칭)" 사용 가능
(단, 살인/자살 등 사회적인 이슈가 있을 경우, 문구사용을 제한할 수 있음)
- 영화 제목의 "살인, 죽음" 등이 들어가는 경우는 허용

10) 게임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은 광고 집행 불가
2.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거나,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등급과 다른 등급을 표시하는 경우 광고 집행 불가
3. 게임 결과에 의해 현금 또는 다른 물품을 제공받거나 취득할 수 있는 경우 광고 집행 불가
4. 게임광고임이 쉽게 인지되도록 제작해야 하며, 지나치게 사실적으로 묘사된 이미지는 광고 집행 불가
5. 선정적인 캐릭터 이미지, 실제 총기로 오인될 여지가 있는 이미지, 폭력적이고 잔인한 이미지 등은 광고 불가
6.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광고 시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 불가
   - 선정성과 폭력성이 짙은 성인용 게임
   - 뉴스나 신문에서 볼 수 있는 "살인, 살해 등 단어 및 살해당하다(제3인칭)" 사용 가능
   - 사행성 게임(고스톱, 포커 등) 및 사행성 게임과 유사한 형태의 게임
   - 선정적이고 음란한 표현, 폭력적인 표현,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표현
7. 게임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분류되어 광고 집행 불가

11) 보험

1. 보험상품에 관한 객관적 사실이 포함되어야 하며, 오해 또는 과장의 소지가 있는 내용은 광고불가
2. 보장내용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할 경우 광고불가
3. 보험과 관련된 이율이나 조건 등에 대한 표현은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경우 광고불가
4. 보험상품 광고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보험상품표시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및 금융감독원의 보험상품 판매광고 가이드라인을 준수함

12) 대출/대부업

1 대부업 광고의 경우, 브랜드 검색 상품만 집행가능

2 단, 공중파/케이블의 동영상 광고인 경우에는 성인타겟팅이 가능한 CPM 동영상 상품으로 제한적 진행 가능 (Kakao의 사전승인 필수)

3 합법적인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 외에는 대부업에 관한 내용은 광고불가

4 여신금융상품 광고는 여신금융협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필증이 없을 경우 광고 불가(배너 소재 내에 광고 심의필 삽입)

5 대부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함
①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② 대부업 등록번호
③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및 연체이자율
④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역
⑤ 금전대부의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자는 대부중개업자라는 사실여부
⑥ 영업소의 주소와 전화번호
⑦ 대부업을 등록한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명칭
⑧ 불법중개수수료와 과도한 차입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⑨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6 대출/대부업 광고물이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 불가
① 대출/대부업 광고물 내에는 "무담보, 무보증, 무이자, 신용조회 없음, 저금리, 금리인하" 등 일부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사용자를 오인/유인하는 문구 내용
②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
③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방법
④ 비교의 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대부 또는 대부중개가 다른 대부업다 등의 대부 또는 대부중개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방법

13) 선거/정당

1 선거광고는 국내 관련 법규가 지정한 특정 기간 내에만 광고 집행이 가능함

2 선거/정당 광고의 근거와 해당 광고주 또는 후보의 이름을 표기하여야 광고를 집행할 수 있음

3 후보자는 광고게시일 전일까지 광고원고/광고계약서 사본을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함

4 모든 선거/정당광고는 국내 관련 법규(공직선거법 등)를 기준으로 하며, 이에 저촉되는 광고는 집행불가

13) 기타 집행불가

1. 종교 광고는 집행불가. 단, 종교관련 물품 판매 및 행사고지 광고는 집행가능
2. 개인적 이슈에 대한 의견 광고는 집행불가
3. 사회적 이슈가 있는 내용과 해당 이슈에 대한 의견광고는 집행불가
4. 타인 혹은 타집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방 등 권리침해가 우려되는 광고는 집행불가
5. 법적으로 규정된 불법적 유통/제작 제품인 경우는 광고 집행불가
6. 저작권 분쟁의 이슈가 있는 파일다운로드 사이트의 광고는 집행 불가
7. 채팅 및 미팅사이트의 광고는 집행 불가

감사합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